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11.11.22>

공무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자격기준
교육원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인 사람
한국학교	교장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사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비고 : 이 표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경력 및 재외국민 교육경력을 말한다.		